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7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이훈기·복기왕·이정문

박지원 • 조인철 • 정동영

김정호 · 김용만 · 박수현

주철현 · 김원이 · 노종면

박민규 · 황정아 · 조승래

민병덕 · 김남근 · 문금주

최민희 • 황명선 • 박용갑

김 현 의원(22인)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

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46조 등).
- 나.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제 청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제5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11人"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理事는"을 "이사는 제4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3명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의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경우 추천하는 사람 3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4. 공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

람 3명. 다만,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 소속 전체 근로자가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여 추천한다.

- 5.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 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제47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장의 임면(任免)제청

7의2.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7의3.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제2항 전단 중 "任命"을 "임면(任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거쳐야"를 "거쳐 임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후보자를 정하여 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임명제청을 하여야한다.
- ⑧ 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2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 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7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사장후보자 에 대한 임명제청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⑧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장후보자 공모, 응모자의 주요경력 및 업무수행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 응모자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50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50조의4(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등) ① 이사회는 사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사장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추천위원회 구성 다음 날까지 추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추천 대상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 "추천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추천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추천대상자는 추천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사 소속 근로자의 평가를 반 영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65일 전까지 사장후보자를 3명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53조의2(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이사 및 집행기관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 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이사 및 집행기관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이사 및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46조의2 및 제50조제8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 3. 이사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 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사의 소관 직무와 관련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사·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 및 제50조제8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사장이 되 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이사 및 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 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 개 정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 시 임명된 이사와 사장의 임기는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 제4조(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 사의 이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제5조(이사 및 집행기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사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②
이사 <u>11人</u> 으로 구성한다.	<u>13명</u>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③ 이사는 제46조의2 각 호의
고려하여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
	<u>역 및 사회</u>
	<u>다음</u>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u><신 설></u>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
	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3
	명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한
	다.
<u> <신 설></u>	
	원의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ㆍ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3명에는 대통령령으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2명
- 4. 공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 소속 전체 근로자가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여 추천한다.
- 5.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u>④</u> ~ <u>⑥</u> (생 략)

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 단서</td>신설>

⑧ · ⑨ (생 략)

<신 설>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8 -----

-----. <u>다만, 제</u> 49조제1항제7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 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4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 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 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 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 ·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 第47條(理事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 6. (생략) <신 설>

- 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 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방송 · 언론 관련 단체나 기 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 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 이 되는 사람
- 第47條(理事의 任期) ① ------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7.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 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 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 교육방송공사 또는 제2조제3

② (생 략)

-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 1. ~ 6. (생 략)
 - 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

<신 설>

<신 설>

8. ~ 15. (생략)

② (생 략)

第50條(執行機關) ① (생 략)

② 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사

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 다)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 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 1. ~ 6. (현행과 같음)
- 7. 사장의 임면(任免)제청
- <u>7의2.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u> <u>장의 임명동의</u>
- 7의3.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8. ~ 1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第50條(執行機關) ① (현행과 같음)

② -----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사 ------임면(任免)----. ----

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u>거쳐</u> 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④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거쳐 임명하여야----.

- ③ (현행과 같음)
- ④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후보자를 정하여 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임명제청을 하여야 한다.
-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 ⑧ 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에 공 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 상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 위원회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7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이사회 가 사장후보자에 대한 임명제 청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 다.
- ⑤ 추천위원회는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원 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 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 여야 한다.
- ⑧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장후보자 공모, 응모자의 주요경력 및 업무수행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 응모자에 대

<신 설>

<신 설>

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50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
- 3.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u> 견인

제50조의4(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등) ① 이사회는 사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대장 사장에 대하여 사장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 대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추천위원회 구성 다음 날까지 추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선 정된 추천 대상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대상자"라 한

다)의인적사항과추천대상자가제출한자료를추천위원회에제공하여야한다.

- ③ 추천대상자는 추천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 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사 소속 근로자의 평가 를 반영하여 사장후보자를 추 천하여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사장의 임기 만료 65일 전까지 사장후보자 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 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

제53조의2(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이사 및 집행기관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 니한다.

② 이사 및 집행기관은 정치활

<신 설>

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이사 및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46조의2 및 제50조제8항에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 3. 이사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경우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사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취한 경우